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09조 · 제110조의 요약

- 법인설립등기일(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설립신고서+정관+주주명세)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신고(설치신고서+본점 등기서류+정관+지점 등기부등본 등)
-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 있는 경우도 국내사업장 설치신고함.
-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달 이내에 개시신고서 제출
- 모든 법인은 법인·사업장 신고내용 변동있으면 변경일부터 15일내 변경신고함.

●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I. 법인설립·지점설치 및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

1. 본 조의 개요

① 법인설립신고·지점설치신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등기후에 세무서에 설립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은 법원에의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갖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와 대차대조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속대리인을 국내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사업자등록하면 법인설립신고나 국내사업장설치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설치 신고후 그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은 열거된 수입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부터 2월내에 제반인적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수익사업의 개시제무상태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중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영리사업만 한다면 법인세에 관한 제반권리와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한다.

2. 설립신고 등의 의미 및 세법상의 권리·의무 주체

법인격이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거래의 필요상 독립의 법적주체로 다루는 법률적 기술에 의거 부여된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은 이러한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하나의 인격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 법률요건이다.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자격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함이 일반적이다. 우선 발기인 등을 모집하고 법원(상업등기과)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며, 법인설립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설립신고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설치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II.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법 제109조제1항)

1. 설립신고 및 관련서류

① 법인설립신고절차

내국법인이 법원에 설립등기후 세무서에 설립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법인설립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납세지(영리법인은 본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시행령과 규칙은 이밖에 설립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등의 명세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됨).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

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

▲ 시행규칙 제74조 【주주 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 등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등 설치신고서, 한국은행 등의 허가서 등과 대차대조표, 본점등기관관련서류 정관 등을 첨부한다.

외국법인의 한국현지법인과 합작법인 등은 외국인투자신고서나 인가서사본도 외국인지분 파악을 위해 제출된다.

③ 사업자등록의 법인설립신고간주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법인설립신고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혹은 본법 제111조의 사업자등록하면 설립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설립신고기안과 기안경과 신고요과

① 법인설립 신고기안

관할세무서에 대한 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국 설립등기일을 법인의 실질적 탄생일로 보는데 실제상의 개업일과 관계없이 등기 등의 형식요건을 중시한다.

② 기안경과후 신고의 효과

본 조는 법인의 설립등기후 신고요건을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법규정에서 기한이나 의무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규정이 있으나 본 조 위반에 대해 가산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조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등의 규정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설립등기전에 법인활동이나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데 법인업무와 관련된 수익이라면 설립연도 1년 이내 손익은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신고기한경과후에 설립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III.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법 제109조제2항)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관련서류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방법

외국법인도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갖게 된 경우 가진 날로부터 2월(2달) 내에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서나 대차대조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다음 시행령은 외국법인 관리책임자는 국내사업장 등기관관련서류와 정관 및 지점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 관
3. 삭 제 (2010. 11. 2)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1. 2 신설)

②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설치신고

외국법인자체의 하부조직 고정사업장이면 제반서류를 내지만, 독립적인 관계의 대리인이면서 실질적 종속관계의 고정사업장 역할을 한다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는 외국법인과 당해 대리인의 실질관계를 기록한다.

③ 사업자등록의 지점설치신고간주

본 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국내사업장설치신고를 겸하는데 사업자등록하면 국내사업장설치신고한 것으로 본다.

2. 국내사업장설치신고대상인 부동산소득 있는 외국법인

(법 제109조제4항)

①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설치신고의무가 있는 신고대상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나 실제로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지만 법에 의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된다(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제94조 해설 참조).

본 법상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도 본 항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의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종합합산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장소이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러한 장소에 물적시설은 있으나 인적 시설이나 요원이 없어 정규고정사업장이 아니라도 고정된 장소라는 차원에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제출이 준용된다.

3. 국내사업장설치 신고기한

① 국내사업장 보유일부터 2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는 고정된 장소를 가진 날로부터 2월내로 하고 있다.

내국법인 역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시 법인(상업등기과)에 등기할 수도 있으나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국내사업장등기일 한국은행에의 등록일 등에 관계없이 실질성을 중시하여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지연신고서의 효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더라도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IV.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법 제110조)

1.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관련서류

① 수익사업개시 신고방법

비영리 내국법인 및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영리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와 지점설치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지만 수익사업분야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경우도 세무상 차원에서 보아 수익사업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실제의 의사결정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와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기존비영리분야에 관계없이 수익사업개시부분에 대해 법인의 신규설립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② 수익사업개시 신고서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신고서류는 신고서와 재무상태표이다.

2. 수익사업개시 신고기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익사업개시라 함은 비영리법인이 본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게 된 때라고 보는데, 소득이 창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의 개시를 말한다. 이는 영리법인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개념을 준용하면 된다.

V. 신고내용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09조제3항)

1. 신고내용의 변경사항

① 변경신고방법과 요건

법인설립신고를 한 내국법인이나 지점설치신고를 한 외국법인이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 변경사항의 예를 들면 주소변경, 상호변경, 정관 등의 사업목적변경, 대표이사변경 등이다. 외국법인의 경우는 본점사항의 변경의 예로 상호변경, 정관변경 등이 있고 국내지점의 경우는 주소변경, 지점장변경, 관리책임자변경 등이 있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 관리책임자변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데 다음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소·거소 등을 신고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변경신고기한 및 관련서류

①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내용의 변경신고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내용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